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9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규남, 강석주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문성호, 윤종복,  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  
이효원, 임춘대, 허훈,  
황유정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서울시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 예절,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반려동물 ‘장례문화’를 정의함(안 제2조제17호 신설)
- 나. ‘반려동물장묘시설’을 ‘공설동물장묘시설’로 용어를 수정함(안 제30조제1항)
- 다.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·홍보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0조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동물보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“장례문화”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, 의식,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.

제7조의5제4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5조제4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”로, “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·운영될”을 “동물을 위한 장묘시설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반려동물장묘시설”을 각각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 및 홍보

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「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<u>“장례문화”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, 의식,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.</u></p> <p>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

제30조(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0조(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성숙한 반려동물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---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----.

② -----  
- 공설동물장묘시설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공설동물장묘시설-----  
-----  
-----.

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에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 예절,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임
- 안 제2조(정의)의 제17호는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며, 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제4항은 “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예산의 범위”로, 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제4항은 “예산의 범위 내”를 “예산의 범위”로, 제30조의 제목은 “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”을 “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”으로, 같은 조 제1항~3항은 “반려동물장묘시설”을 “공설동물장묘 시설”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- 또한, 안 제30조제4항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예산소요가 발생할수 있으나, **관련부서(서울시 동물보호과)에 문의결과 현재 기추진중인 사업<sup>1)</sup>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**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·추모관 조성계획(동물보호과-2202, 2024. 1. 30.),(추모관 조성 일정 별첨1)  
'25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 계획(동물보호과-5829, 2025. 3. 21.)

[붙임1]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일정(서울시 동물보호과)

## □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일정

추진 절차	주요 내용	시기	관련 부서
사업계획(안) 수립	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계획(안) 수립	'24. 1월	동물보호과
↓			
투자심사	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	'24. 4월	동물보호과
↓	*제출기한 : '24. 2. 5.일까지		
공공건축심의	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	'24. 4월	동물보호과
↓	*제출기한 : '24. 3월(심의 3주 전)		
공유재산심의	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	'24. 5월	동물보호과
↓	*공유재산심의 제출기한 : '24. 4. 17.일까지		
실시협약(서울-연천)	시의회 동의 후 실시업무협약	'24. 6월	동물보호과,
↓			
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(행자위)	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 심의	'24. 6월	동물보호과
↓	*제출기한 : '24. 5월		
설계용역 전 사전절차	기술용역타당성심사, 설계심의, 계약심사, 일상감사	'24. 6~7월	동물보호과
↓			
기본 및 실시설계	입찰공고 후 설계용역 추진	'24. 8월~'25. 4월	동물보호과
↓			
공사발주 전 사전절차	일상감사, 계약심사, 공사관련 인·허가	'25. 4~5월	동물보호과, 도시기반시설 본부
↓			
공사	준공 목표 : '27. 5월	'25. 6월~'27. 5월	도시기반시설 본부
↓			
운영 및 유지관리	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운영	'27. 6월~	동물보호과

※ 추모관 설계예산 '24.7월 이전 확보 전제조건(공사발주 세부 계획 수립 시 일정 변경 가능)